



##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금농장 입식 사전 신고 관련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준수 철저

---

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
2. 금번 개정('21.10.14.)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축(가금)의 입식 사전 신고 대상자는 **입식 사전 신고 시 붙임 별지 제5호의2 서식(뒤쪽)에 따른 점검표\***를 관할 시·군·구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농장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점검표를 작성·서명 후 제출
3.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 관련 단체 등은 가금농장에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자체적으로 꼼꼼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보완한 후 입식 사전 신고하는 등 개정된 법령을 필히 준수하도록 지도·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입식전 신고 확인 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오리농가 입식전 환경검사 및 현장점검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지 제5호의2서식] 가축(닭·오리)의 입식 사전 신고서 1부. 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방역정책과장, 구제역방역과장,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역학조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조류인플루엔자연구지단과장),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방역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장, (사)한국육계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장, 가축유기질비료협동조합장, 농협경제지구 친환경방역부

주무관 박제민 사무관 김석재 조류인플루엔자 전결 2021. 10. 26.  
자방역과장 홍기성

협조자

시행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1. 10. 26.) 접수  
9883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56 팩스번호 044-863-9210 / [parkjemin@korea.kr](mailto:parkjemin@korea.kr) / 대한민국 공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